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미국의 경우 유통계약 시 물품 공급자가 충분한 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됨. 이러한 관행은 유통업자들이 유통계약 시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정부당국은 제조물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유통계약¹⁾ 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물품 공급자가 충분한 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²⁾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공시하는 유통계약서³⁾에는 물품 공급자의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⁴⁾
 - 예를 들어 JBS와 Beef Products 간의 물품공급계약서는 물품 구매자가 사고 당 500만 달러, 최대 1,0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⁵⁾
 - ADT, Tyco, Sensormatic Electronics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자는 500만 달러 이상의 보상한도를 가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⁶⁾

1) 「제조물책임법」상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편의상 유통업자라 함. 유통업자에 도매유통업자, 판매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함

2) Oliver Wyman(2018), 「국내 일반보험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보험시장 조사」의 해외 물품공급계약서 예시 중 일부 활용

3) 여기서 말하는 유통계약이라 함은 통상 물품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 supply contract)임

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ec.gov/>) 참조

5) RAW MATERIAL SUPPLY AGREEMENT between JBS USA, Inc. and Beef Products 계약서 참조

6) MASTER SUPPLY & PURCHASING AGREEMENT between ADT LLC, Tyco Safety products Canada Ltd. and Sensormatic Electronics, 12. INDEMNITY AND INSURANCE 참조

- 위 두 사례를 포함한 대부분 공시 유통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어 계약 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으로 보임

- 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제조물의 생산·유통에 관여한 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⁷⁾
- 유통업자는 자신이 제조물의 결함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으로 손해를 본 유통업자는 제조물 결함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구상(求償)할 수 있음⁸⁾
-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구상을 하지 못해 유통업자가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다음의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동기유인이 미국에 비해 적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물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제조물사고 발생 시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⁹⁾
 - 유통업자가 제조물 결함 발생에 기여한 경우
 - * 예를 들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일부 유통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음¹⁰⁾
-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통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제조물 결함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유통업자는 제조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유통업자가 제조물 결함 발생에 기여한 경우 제조업자가 아닌 자신이 PL보험으로 피해자를 보

7) Hughes Hubbard & Reed LLP(2018), "Products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Issues for Dutch Companies", p. 5; ICLG(2017), "Product Liability 2017" 참조

8) Hughes Hubbard & Reed LLP(2018); Gregory Boop(2017),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ticle, The Balance 참조

9)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참조

10) 매일경제(2017. 8. 9),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 피해 보상 어떻게 하고 있나"

상하게 됨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¹¹⁾

■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동기유인이 적어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고(계약 시 확인)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적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계약 시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¹²⁾
 - 따라서 낮은 PL보험 가입 동기를 가진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시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 예를 들어 2016년 법원이 가슴기살균제 제조업자인 세퓨에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음¹³⁾

■ 정부당국은 제조물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¹⁴⁾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물품공급계약 관련 18개 유통 부문 표준계약서에는 제조업자의 제조물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조항만 있고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없음¹⁵⁾
 - 표준계약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제정·개정되는 것으로서 관련 부문의 표준계약서로 참조·활용됨¹⁶⁾
 -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해 계약에 사용할 수 있음
- 유통 부문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11)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참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2)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참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2014가합563148 참조

14) 이기형·이규성(20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p. 105도 유통 표준계약서상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했음

1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페이지 참조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참조

예상됨

- 표준계약서상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 신설 시 PL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PL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표준계약서는 계약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비해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적음 **kiri**